고운마음주야간보호센터 운영규정(방문요양) 개요

Ⅰ.기관 기본정보

센터명	고운마음주야간보호센터	센터장	조 월 환
설치일자	2019.02.11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림로 56, 하나빌딩 1,2층		
센터전화	042-716-7341	FAX	042-825-7342
이용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③ 이용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수급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를 우선 시 할 수 있다.		

Ⅱ. 종사자 현황

총 (19)명	센터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운전원	계
	1	1	0	21	0	0	23

Ⅲ. 이용정원 및 이용자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및 센터 홈페이지 http://www.longlifecity.com, 전단지 제작 및 홍보물 비치. 지역 게시판 등을 통해 고운마음주야간보호센터의 급여종류인 방문요양 서비스를 소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① 이용 희망자 본인 및 보호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방법

② 지역 내 유관기관에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Ⅳ.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목적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 내용 및 기간

①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 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표준약관양식을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② 서비스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법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계획서 등,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는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필요서류.

2)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구비하고 해당 거주 시군구로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계약기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작성한 이용하는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경우 이용하는 날부터 1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 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퇴소

1)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서비스제공이 종결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여 재계약시에는 퇴소하지 아니한다.

2)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만료 전 보호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등급 탈락 시에는 퇴소를 원칙으로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센터에서 종결을 명할 수 있다.

· 격리가 필요한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부분적 도움을 제공해도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자로서 특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자

·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고 다른 이용자에게 (폭행.자해.성추행.소란 등)을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자

·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시

· 그 외에 이용 대상자의 퇴소는 이용 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후 종결에 따른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퇴소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이용 대상자 퇴소 시에는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수급자의 특성 및 정보를 작성하여 연계기록지를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Ⅴ. 서비스 내용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본 센터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담서비스
- 의료서비스
- 위생서비스
- 인지 · 신체지원서비스 등

②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결정한다.

2. 장기요양 급여 및 월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O 방문요양급여비용(원)(2025.01.01.기준)

번 호	구분	금액 (원)	요 금			
			일반 15%	감경 40% (9%)	감경 60% (6%)	의료수급6%
가-1	30분 이상	16,940	2,541	1,525	1,016	1,016
가-2	60분 이상	24,580	3,687	2,212	1,475	1,475
가-3	90분 이상	33,120	4,968	2,981	1,987	1,987
가-4	120분 이상	42,160	6,324	3,794	2,530	2,530
가-5	150분 이상	49,160	7,374	4,424	2,950	2,950
가-6	180분 이상	55,350	8,303	4,982	3,321	3,321
가-7	210분 이상	61,670	9,251	5,550	3,700	3,700
가-8	240분 이상	68,030	10,205	6,123	4,082	4,082

○ 등급별 재가급여 월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7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별표1]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보증인)의 의무사항(수급자건강, 병적상태 등 자료제공)을 서비스 계약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③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를 숙지, 동의하고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한 사항을 지켜야할 의무를 진다.
④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⑤ 이용료는 급여비용명세서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서비스 종결 시 완납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가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전염성 등 질환 및 폭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 측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신원인수인이 진다.
⑦ 이용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병원으로의 후송조치 시 센터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⑧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⑨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한 경우(독거어르신 등) 센터와 계약 시 지역사회연계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 및 공공기관(지자체. 보건소)등과 협의한다.

2.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

Ⅶ. 계약의 해제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이용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장기입원 필요 한 경우
· 보호자 및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신청 시(이사, 보호자 변경 요청 등)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계약체결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센터에 통보하고 센터에서도 종결사유 발생 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한 후 해지한다.

Ⅷ.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매년 보건복지부(공단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용 등을 변경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납기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및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초과 이용자 1일 급여비용 항목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3.4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용절차 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구에 장기요양급여신청) →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자에게 제출 → 서류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

7) 본인부담금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본인부담율(%) 금액을 납부한다.

IX. 보험가입여부

보험종류		보험사	증서 번호	보험기간
방문요양	전문직업 인배상책 임보험(요 양보호사)	삼성화재재물보험비즈 앤안전파트너	52512405030000	2025.04.04.~2030.04.04